

수 신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1995. 2.

제 목 :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동의서
제출

위의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서면동의
서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제
출합니다.

첨 부 : 서면동의서 1부. 끝.

동 의 자

이 현종
외 1 인



(동의자 서명 : 별첨)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동의일자 : 1994년 2월 일

동 의 자 : 임헌종의원의외 1

1. 主 文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 내용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재 보호·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재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강코자 함.

2. 主 要 骨 子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2조 제1항)

나. 문화재 보호·관리에 보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수를 현행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조정함. (안 제5조 제1항)

다.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현행 “1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조정함. (안 제8조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 을 “문화체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15인이내”를 “20인이내” 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10인이내”를 “15인이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지정문화재”라 함은 시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u>문화공보부장관이</u>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 (정의) ① ----- ----- <u>문화체육부장관이</u> ----- ----- ----- -----</p>
<p>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15인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5조 (구성) ① ----- ----- <u>20인이내</u> ----- -----</p>
<p>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u>10인이내</u>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제8조 (전문위원) ① ----- <u>15인이내</u>의 ----- -----</p>

제 5 편 내무 대전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

● 대전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 [1989. 1. 1
조례 제168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지정문화재(이하“시지정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재 자료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지정문화재”라 함은 시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대전직할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3. 기념물 : 충, 고분, 성지, 연지, 궁지, 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와 경승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그 밖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중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② 이 조례에서 “문화재 자료”라 함은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장이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문화재 위원회

제3조 (설치)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위하여 시에 문화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시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과 해제

제5편 내무 대전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

2. 시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시지정 문화재의 시외반출 허가
6. 시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등의 명령
7. 시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매수
8. 시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호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등)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